
**상생의 금융,
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
금융정책 방안**

2024. 1. 17.



관계부처합동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대응 방향	2
III. 세부 추진방안	3
IV. 기대효과	9

I. 추진 배경

①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자산형성 역할 강화 필요

- 그간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위해 시장규율 확립,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다양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*을 마련·추진

* [규율확립] 물적분할 제도개선, 내부자거래 사전공시,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
[역할강화] 외국인 ID 폐지, 배당절차 개선,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(10→50억원) 등

- 향후, 국민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이나 중장기 투자수단을 확대하는 한편,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필요

※ 우리정부의 규제개혁, 기업 활력제고 노력 등으로 향후 실물경제 성장할 경우 그 과실을 국민들이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발전이 중요

②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

-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 금융지원*으로 활력을 불어넣고, 금융권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*하여 경쟁과 혁신을 촉진

* ①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(80조원), ②대환대출 인프라 구축('23.5월~) ③예대금리차 공시 등

-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,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담*이 크고, 금융권 경쟁 수준도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평가

* 가구당 평균이자 비용('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) : ('21) 209만원 → ('22) 247만원(+18.2%)

③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냉정한 금융 현실

-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('23년 10.7조원(잠정)으로 최대규모)하고, 재기와 자활을 적극 지원

- 다만, 연체자에 대한 낙인 효과, 금융지원과 고용간의 연계 부족 등으로 취약계층이 실패 이후 재기하는데 많은 어려움 존재

⇒ 부처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에 “더 큰 역할”을 부여

II. 대응 방향

◆ 국민투자자, 서민차주, 취약계층에 “기회의 사다리”가 되어주는 금융

추진 방향	세부 과제
<p>1.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(“자산 형성의 사다리”)</p>	<p>(가)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금투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 ② ISA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 <p>(나)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②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 ③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 <p>(다) 공정·투명한 시장질서 확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 ②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,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 ③ 자사주·전환사채(CB)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
<p>2.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(“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”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 ②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③ 모든 서민금융을 한번에 해결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
<p>3.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(“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”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용사면, 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②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 ③ 금융·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

Ⅲ. 세부 추진방안

1

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

가.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위·기재부 협업

① 금투세 폐지 등 주식 세제 정비

- (금투세 폐지) '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*를 폐지하여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

* (대상)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·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(상환, 환매, 해지, 양도 등)된 모든 소득 (기본공제) 국내 상장주식은 5,000만원, 기타 250만원 (세율) 20% (과표 3억원 초과분은 25%)

- (증권거래세) 0.15%('25년)까지 인하해 거래비용 절감(시행령 既 반영)

* 코스피·코스닥 세율(코스피는 농특세 0.15% 포함, %):

('20년) 0.25 ('21~'22년) 0.23 ('23년) 0.20 ('24년) 0.18 ('25년) 0.15

② ISA 지원 강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형성 기회 확대

-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

- (납입한도)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천만원, 총 1억원에서 연간 4천만원, 총 2억원으로 상향
- (비과세한도) 배당·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 (서민형 400만원)에서 500만원(서민형 1,000만원)으로 상향
- (가입대상)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“국내투자형”을 신설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*

*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등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14% 분리과세 혜택 적용

나.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

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금융위·법무부 협업

- (이사의 책임 강화)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,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
- (주총 내실화)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,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의사가 반영*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* 의결권 기준일(연말)과 주총일(3월)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후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개선 등
- (주식매수청구권 확대) 상장법인에 이어,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

②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 강화

- (기업밸류업)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, 시장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“기업밸류업 프로그램” 운영
* [예]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기재,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부여,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ETF 상장
- (배당절차 개선) 배당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유도(우수기업 인센티브), 분·반기 배당절차 제도개선도 추진
- (IR 강화) 상장사, 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정부 주관 온·오프라인 간담회·설명회 등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적극 소통

③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구축

- (주식시장 다양화) ATS(대체거래소) 출범을 통해 거래소 경쟁체계를 본격화하고, 비상장주식 시장을 제도화해 다양한 주식투자 기회 확대
- (상폐절차 합리화) 기업에는 회생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도, 상장 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심사절차 개선
- (자체 야간파생시장) 해외거래소 연계시스템으로 운영중인 야간 파생시장을 자체시장으로 전환하여 거래편의·안정성 제고

다. 공정·투명한 시장질서 확립

①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

- 공매도 전면금지기간 중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
 - (전산화)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
 - (대차-대주 차이) 대차 상환기간 제한, 대주 담보비율 인하(120% ↑ → 105% ↑)를 통해 “기울어진 운동장” 해소
 - (처벌강화)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,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일벌백계

②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, 강력히 처벌하여 범죄유인 근절

-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·사후제재 강화
 - (사전감시)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*, 신고·제보 포상금 확대**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 강화
 - * 위반행위 자진신고 또는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·증언시 제재(형벌·과징금) 감면
 - ** 포상금 지급한도 20→30억원(건당) 상향,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(기준금액 상향 등), 익명신고 도입 등
 - (사후제재) 엄격한 과징금·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, 자본시장 거래제한,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

③ 자사주·전환사채(CB)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이익추구 차단

- (자사주) 인적분할을 통한 대주주의 불합리한 경영권 확보를 방지*하고, 공시**·상장심사도 강화해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선
 - *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
 - ** [예] 일정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시 공시의무 부과, 자사주 처분시 처분목적 등 공시 확대
- (전환사채) 공시 강화*, 전환가액 산정·조정(리픽싱)방식** 합리화를 통해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유인 차단
 - * [예] ①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의무, ②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
 - ** [예] 사모 CB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

①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 이자부담 신속 경감

- (은행권)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.6조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*하고, 기타 취약층을 위해 0.4조원 지원(총 2조원+a)
 - *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% 초과 이자납부액의 90%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지급
- (2금융권) 대출 이용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도 이자부담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, 금리 5~7%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*(재정 3천억원 투입)
 - * 대출금 1억원을 한도로 원칙적으로 5% 초과 이자납부액 1년치 상당액
-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보증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혜택도 강화*
 - * (現) 최대 5.5% 금리 대환, 보증료율 0.7% → (改) 최대 5.0% 금리 대환(1년간), 보증료 면제
- (새출발기금) 지원대상 확대*로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의 채무부담 경감**
 - * (現) 코로나19 직접피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 → (改) 코로나 요건 폐지, '20.4월~'23.11월중 사업 영위
 - ** 지원 내용 : 금리 감면,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, 장기·분할상환 전환(10~20년) 등

②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

- 다양한 주담대·전세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,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*
 - * (기존) 신용대출('23.5.31.~) → (개선) 아파트 주택담보대출('24.1.9.~), 전세대출(1.31.~) 추가
- 금융권의 금리경쟁을 촉진하여 국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

대출 유형	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실적
신용대출 ('23.5.31~'24.1.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총 111,968명의 차주(대출규모 2조 5,284억원)가 대출을 이동 ▶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평균 이자절감 폭은 약 1.6%p, 총 이자절감액은 약 539억원
주택담보대출 ('24.1.9.~'24.1.1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총 5,657명의 차주(대출규모 1조307억원)가 신규 대출 신청 완료 ▶ 대출 갈아타기가 최종 완료된 차주의 평균 금리 하락폭은 약 1.5%p

3 모든 서민금융을 한 번에 해결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

-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민금융지원의 절차 및 소요기간*을 획기적으로 개선

* (現) 센터 내방하여 이용시 **최대 5일** → (改)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**평균 30분 이내**

- (상품조회)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 조회로 최적의 상품 안내
- (대출연계) 보증서 발급시 대출승인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 제공
- (복합상담) 고용·복지,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기능 비대면 제공*

* 복합상담 이용대상자 : (現) 센터방문을 통해 **16만명** → (改) 대면·비대면으로 **70만명**

3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

1 신용사면, 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·중기부·과기부 협업

- 채무자·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,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
 - (신용 사면)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 삭제(290만명 대상)
 - (채무조정 차주) 신복위·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상환시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기간 단축(2년→1년)
 - (재창업자)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중 성실경영 심층평가(중진공·신보) 통과자의 부정적 신용정보(예: 회생·파산)는 금융기관 공유를 제한
- 금융채무 조정 후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-통신 통합 채무조정 실시(최대 37만명 대상)

② **개인채무자보호법**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

-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차질없이 시행('24.10월)하여 신속한 재기를 지원
 - (연체이자) 대출금액 5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
 - (채무조정)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
 - (추심) 추심횟수 제한(7일간 최대 7회), 특정 시간대·수단 연락제한 등 연체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 제한

③ **금융·고용**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 지원 금융위·고용부 협업

- 부처간 협업을 통해 “금융-고용 복합지원” 체계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
 - (인프라) 온·오프라인 연계시스템*을 구축하여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,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·안내
 - * [온라인] 금융·고용 양방향 전산시스템 구축, [오프라인] 고용센터 내 금융상담을 위한 출장소 설치
 - (지원강화) 서민금융제도(금융위)와 고용제도(고용부)간 연계를 확대*하고,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등 혜택도 제공**
 - * [대상확대] (現)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중심으로 1개의 고용제도와만 연계(약 3천명)
→ (改) 서민금융 이용자 중 무직·비정규직 등을 다양한 고용제도와 연계(약 26만명)
[맞춤연계] (구)이직희망시 국민취업지원제도, 내일배움카드 등, (구)직단념시 청년도전지원사업
 - ** 보증료 인하 0.1%p~0.5%p,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평가시 가점 부여
 - (사후지원) 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·안내(약 20만명 대상)

IV. 기대효과

-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,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**“자산 형성의 사다리”**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

- ① (세제지원 강화)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으로 **경제성장 선순환** 기대
- ② (중장기 투자수단 마련) ISA 제도개편을 통해 **국민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**
- ③ (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)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,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**공정한 시장환경 조성** 및 **개인투자자의 합리적 투자** 지원

-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, 금융권 경쟁을 강화하는 등 **“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”**로서 민생금융 활성화

- ① (소상공인 이자환급) 기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되어 **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**(은행권 : 약 187만명/인당 최대 300만원, 2금융권 : 약 40만명/인당 최대 150만원)
- ② (대출 갈아타기 서비스) 국민 다수가 부담하는 거액채무인 주담대·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어 **금융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** 가능
- ③ (서민금융종합플랫폼) 서민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여 **최적의 상품을 대출까지 원스톱**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**복합상담 방식을 비대면으로까지 확대**

-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,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**“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”**로서 상생금융 제도·인프라 구축

- ① (신용회복 지원)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**성실상환자의 경제활동 복귀**가 가능해지고, 통신비·금융채무 일괄 조정으로 **실질적 재기 가능성** 증대
- ② (개인채무자보호법) 과도한 연체이자 부담과 추심으로부터 **일상생활을 보호**
- ③ (금융·고용 복합지원) 금융지원과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하여 **경제적 자활 지원**

주요 정책 과제	조치사항	시행시기
1.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		
(가)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		
▶ 금투세 폐지	소득세법 개정안 제출(기재부)	'24.2월
▶ 증권거래세 인하	-	-
▶ ISA 비과세한도 및 납입한도 상향	조특법 개정안 제출(기재부)	'24.2월
▶ 국내투자형 ISA 신설	조특법 개정안 제출(기재부)	'24.2월
(나)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		
▶ 이사의 책임 강화	상법 개정안 제출(법무부)	'24년중
▶ 주주총회 내실화	(전자주총)상법 개정(법무부)	'24년중
	(기준일)개정안 제출(법무부)	
▶ 비상장법인 물적분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	상법 개정(법무부)	'24년중
▶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마련	거래소 방안마련	'24.1분기
▶ 배당절차 개선	자본시장법 개정	'24년중
▶ IR 강화	IR 실시	'24년중
▶ ATS 출범	ATS 본인가	'24.12월
▶ 상폐절차 합리화	거래소 규정개정	'24.2분기
▶ 야간파생시장 자체시장으로 전환	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	'24.3분기
(다) 공정·투명한 시장질서 확립		
▶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	자본시장법 개정	'24.상반기
▶ 대차-대주 차이 개선	자본시장법 개정	'24.상반기
▶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	자본시장법 개정	'24.상반기
▶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 강화	자본시장법 시행	'24.1월~
▶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	(과징금) 자본시장법 시행	'24.1월~
	(제재대안형) 자본시장법 개정	'24.상반기
▶ 자사주 공시·상장심사 강화	방안 발표	'24.1분기
▶ 전환사채(CB) 제도개선	방안 발표	'24.1분기
2.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		
▶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	집행	'24.1분기
▶ 중소기업권 이자 캐시백	집행	'24.1분기
▶ 저금리 대환보증	집행	'24.1분기
▶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	새출발기금협약 개정	'24.2월
▶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	기시행	'24.1월
▶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	플랫폼 운영	'24.6월
3.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		
▶ 신용회복 지원	-	-
일반 차주	전산시스템 개발	'24.1분기
채무조정 차주	신청원 규약 개정	'24.2분기
재창업자	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	'24.3분기
▶ 금융-통신 통합 채무조정	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·시행	'24.2분기
▶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	법 시행	'24.10월
▶ 금융·고용 복합지원 체계 구축	시스템 및 제도 개선	'24.3월